【붙임】 안내문

-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-

체육교습업 신고 안내

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, 신설 신고 체육시설업인 **체육교습업 신고**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신고기간

: 체육시설법 개정 시행일(2020.11.20.)로부터 1년 이내 신고 필수

→ 2021.11.19.까지

2. 신고대상

: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(농구, 롤러스케이트, 배드민턴, 빙상, 수영, 야구, 줄넘기, 축구, 상기 8개 운동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)에 대해 **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**하는 업

※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

3. 준수사항

○ 「건축법 시행령」에 따른 건축물 용도 제한

- 500m² 미만인 경우 : 근린생활시설 또는 운동시설
- 500m² 이상인 경우 : 운동시설

○ 주류 또는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(자동판매기 제외)

○ 오전0시부터 오전5시까지는 교습을 하지 않을 것

○ 체육지도자 배치완료(2022.12.31.까지) **2023.1.1. 시행*

-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: 1명 이상
-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: 2명 이상

※ 주된 운동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 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음

4. 통학버스 관련 안전조치사항 적용(도로교통법 제53조)

○ 통학버스 운영 시 좌석 안전띠 필수 착용

○ 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및 승·하차 지도 등의 안전조치 필수 실시

5. 면세사업자 전환

: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·지식·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